

2022 주요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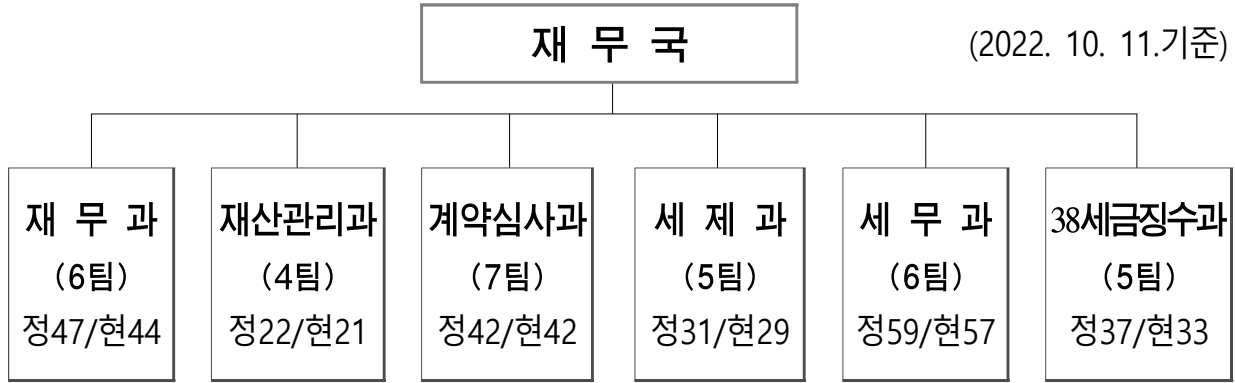
2022. 11. 2.

재 무 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3팀 238명/226명 (정/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별도(재무과3, 38세금징수과6)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
재 산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9,265,157	23,744,942	5,520,215	23.2
시 세	23,095,574	20,023,706	3,071,868	15.3
세 외 수 입	296,809	253,930	42,879	16.9
보 조 금	1,539	2,030	△491	△24.2
보 전 수 입 등	5,871,235	3,465,276	2,405,959	69.4

〈세출예산〉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855	3,128,916	326,939	10.4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	801,642	△9,601	△1.2
기 본 경 비	2,044	2,225	△181	△8.1
재 무 활 동	15,499	3	15,496	516533.3
사 업 비	2,646,271	2,325,046	321,225	13.8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743	1,759	△16	△0.9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2,034	8,935	3,099	34.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35	42	△7	△16.7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761	2,243	△482	△21.5
시세입 목표달성	19,464	10,913	8,551	78.4
조세정의 실현	6,958	7,045	△87	△1.2
타기관지원	2,604,276	2,294,109	310,167	13.5
자치구 교부금(재정보전금)	1,959,075	1,781,631	177,444	10.0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640,196	510,458	129,738	25.4
출연금	5,005	2,020	2,985	147.8

재 산 현 황 (市)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58,059	106,000(100.0%)	63,998	12,800 (100.0%)
행정재산	56,044	104,740 (98.8%)	7,045	5,957 (47.0%)
일반재산	2,015	1,260 (1.2%)	56,953	6,843 (53.0%)

II .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1.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정책
과
제

실
천
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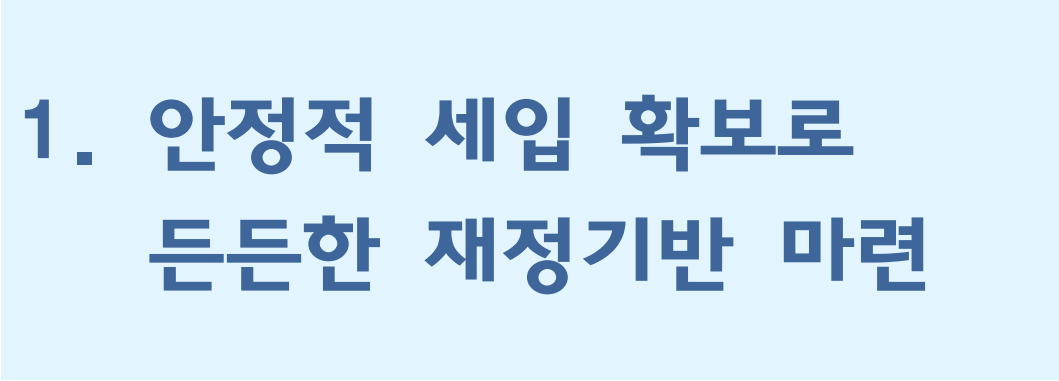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도 누락 세원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로 '22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시세 목표: 23조 956억원(전년대비 3조 719억원 ↑, 15.3%↑)

○ '22. 8월말 18조 141억원(진도율 78.0%) 달성

(단위 : 억원)

구 분	'22년 예산 (A)	8월 실적(누계)		전년동기 실적대비		
		징수액 (B)	진도율 (B/A)	'21.8월 징수 (C)	증감액 (D=B-C)	증감율(%) (D/C)
시 세	230,956	180,141	78.0%	173,254	6,887	4.0%
취 득 세	62,046	43,140	69.5%	55,383	-12,243	-22.1%
지방소득세	60,522	71,994	119.0%	58,522	13,472	23.0%
지방소비세	21,892	20,538	93.8%	15,550	4,988	32.1%
재산세	38,276	12,677	33.1%	12,091	586	4.8%
기타세목	48,220	31,792	65.9%	31,708	84	0.3%

추진 내용

- “세입징수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세 징수 목표 달성
 -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세입실적 분석 및 목표액 배정(2월)
 - '22년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개최(제1차 5월, 제2차 11월 예정)
- 개인소유 법인시공 건축물 및 다주택자에 대한 누락 세원 발굴
 - 개인 신축 건물 조사계획 수립, 대상자 조사 및 부과(1월~8월, 취득세 28억원 추정)
 - 다주택자 가족 간 유상 거래 자료추출, 대상자 확정 및 조사(9월~12월)
- 부동산 취득 법인 등 적극적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세무조사 계획을 통한 조사대상('21년 25개 → '22년 50개) 확대 선정(5월)
 - ▶ '22년 법인 세무조사 및 시 직접부과 추진('22.9.30.기준 취득세 등 157억원 추정)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2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시세 징수교부금	640,196,050	588,721,154	92.0	51,474,896	100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체납자 자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

□ '22년 체납 징수목표액 : 2,100억원

- '22.8월말까지 1,905억 원 징수, 목표 대비 90.7% 달성

□ 추진 내용

- 저축은행 및 본점없는 제2금융권 4,044개소 일제조사 및 압류·추심
 - 농축협·저축은행 1,194개소 조사완료 : 435백만원 징수, 274건 2,404백만원 압류(3~8월)
 - 새마을금고·신협 2,850개소 조사 진행 중(10~12월)
- 분양권·임대차보증금 일제조사 및 체납징수
 - 주택분양권 : 5,177건 조사완료, 111건 134백만원 징수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 117,851건 조사완료, 405건 709백만원 징수
- 압류재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체납세금 소멸 방지(연중)
 - 실태조사단(뉴딜알자리 5명)이 1,962명 체납안내문 부착 등 조사 : 102명 418백만원 징수(3~9월)
 - 압류된 보험계약의 분기별 관리 및 실효된 보험계약 즉시 추심(5~12월)
 - ▶ 압류보험 관리기능 세무종합시스템 개선(5월), 31개 보험사 1,636건 조사완료(8월)
- 시와 자치구 등 유관기관 협업하여 체납차량 집중관리(연중)
 - 전국최초 야간음주 단속시 시·자치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체납단속: 2회(4월, 6월)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맞춰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9,851건 1,768백만원 징수(6월)
 - 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견인: 영치 195대 견인 3대, 20백만원 징수(7월)
 - 시와 경찰청·도로공사 톨게이트 합동 체납차량 단속(11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2년말 집행예산액	
				예상액	집행률(%)
고액 체납시세 징수	1,022,857	771,129	75.4	1,022,857	100

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부동산(주택 및 비주거용건물) 공시가격의 균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산정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

□ 추진 배경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 보유세·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7개 분야 활용
- 공시가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자치구 전문성 지원 등 필요

□ 추진 내용

-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자체분석연구('20년부터 시행중)
 - '21~'22년 주택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상·하반기 총 2회)
 - ▶ 상반기 연구 후 자치구별·가격구간별 형평성 측정 결과 정부에 의견 개진('22.8.1.)
- 「공동주택 공시가격 효율적인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 용역(2~9월)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무적·효율적인 조사·평가의 구체적 방안 연구
 - 시·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대비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 ▶ 최종보고회 개최(한국지방세연구원, 9. 30), 11월 초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
-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연구 추진
 - 시가표준액 산정시 지역별·유형별 가격수준 비교산출방식 도입 필요성 도출('21용역결과)
 - 유형별·구청별·가격구간별 비율 조사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4월~11월)
 - ▶ 행정안전부에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구 결과 반영 적극 요구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연 2회)
 - ▶ 상반기 실적: '22. 1. 26.(수) 자치구 직원 54명 교육/ 하반기(예정): '22. 12월중(직원 50명)
 -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2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2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	103,350	98,150	94.9	103,350	100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세제 지원으로 민생 회복 도모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지방세 감면

- 현재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존치기간 1년 초과 시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 가중
 - 서울시 선별진료소 총 238개소 중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133개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납세부담 경감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건축물 감면 조항 신설('22.3.10.공포)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면제
 - 자치구도 구세감면조례에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24개구 개정완료, 1개구 추진중)
- 감면실적 : 취득세 6백만원, 재산세(구세포함) 1.4백만원('22.10월.기준)
 - ※ '21~'22년 총 25백만원 감면 예상(구세 포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계속 지원

- 대 상 : 코로나 피해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내 용 : 임대료 35~ 40% 감면, 관리비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 기 간 : '22년 7월 ~ 12월
- 규 모 : 159억원 예상
- 실 적 : 총 4,243개소, 1,255억원(추정) 지원(28개월, '20.2월~'22.6월)
 - 임대료 990억원, 공용관리비 75억원, 납부유예로 190억원 지원효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계속 지원

- 대 상 :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
- 내 용 : 납부기한 연장, 세율인하,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 실 적 : 총 407,436건, 1,857억원 지원('22.1~9월)

예산집행 : 비예산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전자송달·납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하고,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납부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성 제고

□ 추진 내용

○ 전자송달·납부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통합

- 현 행: 전자송달·납부 납세자에게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혜택 각각 제공
 - ▶ 고지서 1건당 마일리지 350~850원 적립, 세액 공제 250~600원 공제
- 개 선: ‘세액공제’로 통합 운영(고지서 1건당 800~1,600원 공제)

(단위: 원)

구 분	전자송달	자동이체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 공제	800	800	1,600

○ 전자송달 신청·납부 서비스 확대

- 전자송달 신청·납부 스마트폰 앱 확대: 기존 4개 → 5개로 확대(3월)
 - ▶ (기존) 카카오·네이버·페이코·신한 앱 → (추가) ‘토스’ 앱
- 전자송달 신청 QR코드 제공(2월): 간편결제사 개별사이트 방문 불필요
- 전자송달 현황('22.9월말 기준)
 - ▶ '22년 정기분 부과고지 17,938천건 중 전자송달 4,544천건(25.3%)

(단위: 천 건)

연도	전자송달 (A)	전자송달 비율 (A/B)	정기분 부과고지				
			소계(B)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2022	4,544	25.3%	17,938	1,376	3,008	4,615	8,939

※ '21년 전자송달 비율: 23.8%

○ AI챗봇 이용 ‘세금 상담’ 서비스 고도화

- 이용 수단 확대: 기존 스마트폰 앱 → PC 챗봇 서비스 추가 완료(8월)
- 향후 계획: AI챗봇 상담지식 확대(지속), 음성 답변 챗봇 개발(~12월)

□ 예산집행 : 비예산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현장 세무상담 확대로 영세납세자 세무 궁금증 해소 및 절세 방안 지원

□ 운영 개요

- 구 성 : 423개동 425명('20년, 4기) → 426개동 428명('22년, 5기)
※세무사 재능기부와 연계한 지자체 최초 민관세정협력사업 시행('15.1월)→ 전국 확산('16.6월 행안부)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임기 2년)
- 성 과 : 상담 2,801건('22.8월말), 누적 총 2만 9천여건('15~'22.8월)

□ 추진 내용

- 제5기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1월~12월)
 - 서울시 트위터 및 전광판·시민게시판·지하철역사 마을세무사 홍보글 게시
 - 리플릿·포스터 제작 후 자치구 및 다중시설에 비치, 홍보 협조 요청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서비스 운영(6월~9월)
 - 복지관 내 사전 상담예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1:1 대면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4회 43명 상담)



□ 향후 계획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서비스 지속 운영(10월~)
 - 복지관,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설 등 정기(월1회) 방문상담 실시
 -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시 현장 세무상담 부분 지원
- 마을세무사 활동 독려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12월)
 - 우수 활동자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활동실적 저조한 세무사 독려 등
 - 마을세무사 사기진작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및 지원사항 지속적 발굴(상시)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2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17,750	87.5	19,150	100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연계·일자리 등 체납자 맞춤형 경제재기 지원 및 성실납세자로 전환

□ 추진 배경

-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발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체납자 지원 필요

□ 추진 내용

- 서민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일자리 등 맞춤형 체납자 경제재기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계속 사업	복지지원	60세이상 1,837명 ※('21년) 65세이상→('22년)60세이상	무재산, 고령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기초생활 수급 지원
신규 사업	일자리지원	40세 ~ 59세 3,186명	무재산, 무직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정보 알선
	회생 등 지원	복지·일자리 지원 대상 중 필요한 경우	무재산, 채무과다 체납자 회생 파산 안내

- 뉴딜일자리 등 활용 생계형 서민체납자 적극 발굴을 위한 전문상담사 상담
 -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 2명(3~12월까지 10개월 근무)
 - 생계형 서민체납자 5,023명 발굴 : 2,675명 조사, 164명 상담
 - ▶ 복지지원 확정 18명(기초수급 3, 기타 15), 일자리 확정 1명, 연계요청 122명(복지 85, 일자리 29, 회생파산 8)
- 서민 체납자의 급여 압류 제한은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5만원 적용(지방체납자 급여 압류 제한 월 185만원)
-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완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2년말 집행예산액	
				예산액	집행률(%)
서울형 뉴딜일자리 (※ 일자리정책과 재배정)	101,171	47,888	47	71,888	71

※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도취업으로 3명→2명으로 감소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3-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서울형품셈 등 공통기준으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의 과다 지출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조기발주 적극 지원

계약심사 개요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자치구 :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함

- 대상사업 :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민간위탁 등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전문 공사 (조경, 전기, 통신, 설비)	용역	물품 제조·구매	민간위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사무, 시설 위탁사업 (금액제한 없음)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설계변경 공사 포함

- 심사내용 : 산출금액·물량·표준품셈·제경비율·시장단가 등의 적정성

추진 내용

- 최근 3년간 총 10,315건 8조 6,287억원 심사, 3,475억원 절감(절감률 4.0%)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10,315	8,628,734	8,281,180	347,554	4.0%
2022.9월	2,689	2,376,820	2,282,932	93,888	4.0%
2021년	3,715	3,045,855	2,931,964	113,891	3.7%
2020년	3,911	3,206,059	3,066,284	139,775	4.4%

- 적정 원가 산정 및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재정집행 지원

- [서울형품셈] 표준품셈에 없거나 상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을 잘 반영한 서울형 품셈을 민·관 협업방식으로 개발 ※ 5개 분야 8건 현장실사 중(22.12월 개발 완료예정)
- [사전검토제] 계약 사전절차(건설심의 등) 진행 중 병행 검토로 심사기간 단축
 - ▶ 9월말 실적 : 공사분야 1,161건 중 사전검토 302건(사전검토율 26.0%), 처리기간 2.7일
- [유사사업 통합심사] 기관별 발주하던 유사사업(가로등 개량공사 등) 일괄신청
 - 통합심사로 심사 효율 도모 ▶ 9월말 실적 : 193건 중 185건 심사(96%), 처리기간 2.8일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사업 발주단계부터 계약완료단계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서울 계약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 추진 내용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 '22년 9월말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총 11회 개최, 71건 심의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12월)
 -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 7일 이내 완료,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완화
-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1월~)
 - 입찰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실업체 패널티 부여
 -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1.20) 및 「협상계약 정량평가 표준안」(2.14) 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점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평가 신뢰도 제고(2월~)
 - 수행능력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계약 가점 평가방법 변경, 변별력 강화
-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 등 실적증명 서비스 제공(10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2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140,306	68,655	48.9	137,310	97.9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037	13,966	51.7	22,966	84.9

3-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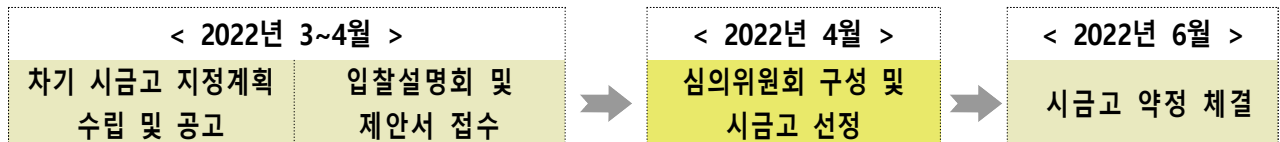
현 시금고 약정기간('19.1.~'22.12.) 만료 도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시금고 선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차기 시금고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3. 1. 1. ~ '26. 12. 31.(4년)
- 재정규모 : '22년 예산 47.7조원(일반 31.3조, 특별 12.9조, 기금 3.5조)
- 금고은행 : 1금고 신한은행(일반회계, 특별회계), 2금고 신한은행(기금)

□ 추진 내용

-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 선정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등 평가 강화
- 시민이용 편의성 증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참여 유도로 사회적 책임 강화
 - 비대면 추세에 맞춘 ATM 수, 녹색금융 이행실적 평가항목 등 신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및 투명한 선정 절차로 시정 신뢰도 제고



-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관리 추진
 - 금리 인상에 따라 유휴자금의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 이자수입액('22.9.30기준) : 1,267억원(일반회계 1,167억원, 특별회계 100억원)
-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적기 지원
 - 소비투자분야 우선 지출, 신속집행 등 부서협력을 통한 전략적 세출집행

□ 향후 계획

- 2금고 인수·인계(우리은행 → 신한은행) : ~ 12월
-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예금 분할 예치 등 적극적 자금 운용으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추진 개요

- 대상기관 : 42개 기관 276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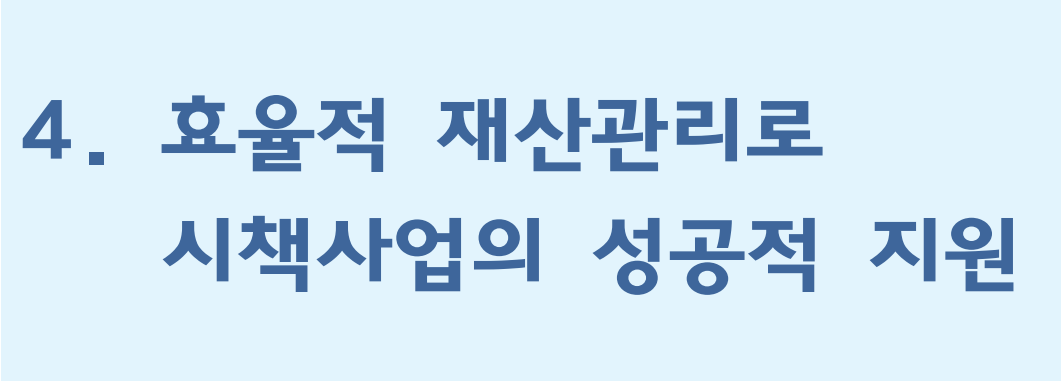

□ 추진 내용

-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결과(안) 보고 : 3.21.
- 결산검사위원 선임(제306회 임시회)
- 결산검사 실시 : 4.12. ~ 5.16.(35일간)
 - 시정권고사항 68건, 개선건의사항 27건, 수범사례 2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5.30.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08회 정례회) : 6.10. ~ 6.23.
- 결산 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결산 실시 : 6.23. ~ 9.30.
 -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 7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1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결산업무 추진	205,410	201,124	97.9	202,024	98.4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4-1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4-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4-1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시 차원의 체계적 재산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시유지 지적 정리 등을 통해 시유재산 가치 증대

□ 추진 내용

- 누수 없는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총괄관이 주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 실시
 - 은평·마포구 내 전체 시유재산(토지 5,975필지, 건물 187동) 조사 실시
 - 무단점유 재산(39필지), 공부상 내용이 불일치한 재산(61필지) 등 145필지 발굴하여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22백만원) 부과하고 불일치 재산은 지적 공부 정리('22.12)
 - '23년도부터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 매년 1개 권역씩 조사 실시
- 미래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서울시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 추진
 - 파출소 등으로 국가에서 사용 중인 시유재산(26필지 48개동, 672억원)과 물재생센터 등으로 시에서 사용 중인 국유재산(185필지, 1,739억원) 대상
 - 교환 대상 확정을 위해 기재부·경찰청 협의(4회)·市 재산관리관별 검토(4~9월)
 - 교환 대상 목록 확정 후, 공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교환 추진('23.상반기)
- 여러필지로 산재된 시유지 지적 정리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및 우이동 차량기지 등 4개소(171필지→14필지)
 - ※ 그간의 실적('16~'21) : 662필지/1조9천억원 → 47필지/2조6천억원(+7천억원)
-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 마련으로 시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
 - 정비사업 지구내 시유지 적기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매각
 - ※ 한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등 46필지 775억원
 -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을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토지 134필지, 건물 6동)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2. 9. 30.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2년말 집행예산액	
				예산액	집행률(%)
시유지 집단화 사업 등	1,434,840	1,403,201	97.7	1,403,201	97.7

4-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

추진 내용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매년 5회계연도(’23~’27) 이상의 중장기적 총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
 -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 작성(7~8월) 후, 재산총괄관이 전체 중기계획 수립
 - 전문가 검토회의(9월)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0월)를 거쳐 시의회 제출(11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제 정비 및 개정 추진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총 28개) 등 자체 전수조사 및 검토(’22.3~5월)
 -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조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항 등은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은 반영(’22.10.17 공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 및 관리계획 사후관리 체계 마련
 -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5회 개최 [209건 심의(194건 적정, 15건 보류) ’22.9월 기준]
 -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90㎡이상 처분, 교환) 및 다른 지자체의 영구시설물 축조 시 사전심의 기능 추가
 -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DB 구축(’22년 28건)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022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독촉고지(212건), 압류(72건)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체납금 정리실적(9월 기준) : 355건, 29억원(전년(26억원) 대비 11% 증가)
 -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병행

예산집행 : 비예산

IV.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 세입현황

(단위: 백만 원, %, '22. 8. 31. 기준)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산전망	
				금액	결산율
계	29,265,157	25,057,411	24,159,997	31,680,650	108.3
시 세	23,095,574	18,898,450	18,014,149	25,482,605	110.3
세 외 수 입	296,809	286,187	273,074	325,271	109.6
보 조 금	1,539	1,539	1,539	1,539	100.0
보 전 수 입 등	5,871,235	5,871,235	5,871,235	5,871,235	100.0

□ 세출현황

(단위: 천 원, %, '22. 9. 30.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합 계	3,456,661,904	1,911,468,119	55.3	3,436,718,531	99.4
재 무 과	795,532,814	591,561,434	74.4	781,405,441	98.2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07,988	411,299	50.9	663,980	82.2
2021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68,806	252,326	93.9	267,465	99.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11,013	206,648	97.9	206,648	97.9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22,036	210,634	65.4	322,036	10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037	13,966	51.7	22,966	84.9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45,750	45.3	65,750	65.1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40,306	68,655	48.9	137,310	97.9
국고보조금 반환	32,930	-	-	32,930	100.0
기본경비	1,580,356	1,171,037	74.1	1,580,356	100.0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342	589,181,119	74.4	778,106,000	98.2
재 산 관 리 과	27,544,217	27,129,630	98.5	27,307,058	99.1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10,400,000	10,245,039	98.5	10,245,039	98.5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507,250	1,325,694	88.0	1,427,861	94.7
사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6,933	60,913	48.0	124,333	98.0
기본경비	47,366	35,525	75.0	47,366	100.0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62,668	15,462,459	100.0	15,462,459	100.0
계 약 심 사 과	103,873	77,907	75.0	103,873	100.0
계약심사 업무추진	35,250	26,438	75.0	35,250	100.0
기본경비	68,623	51,469	75.0	68,623	100.0

구 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세 세 과	1,966,065,752	695,547,558	35.4	1,966,063,540	100.0
재정보전금	1,959,074,763	688,645,158	35.2	1,959,074,763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5,005,428	5,005,428	100.0	5,005,428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8,520	141,552	79.3	177,512	99.4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18,057	94.3	19,150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	-	-	-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46,356	1,530,809	99.0	1,546,356	100.0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112,350	102,350	91.1	112,350	100.0
국고보조금 반환	3,631	574	15.8	3,631	100.0
기본경비	124,354	103,630	83.3	124,350	100.0
세 무 과	659,937,053	592,282,948	89.7	654,612,152	99.2
시세 징수교부금	640,196,050	588,721,154	92.0	640,196,050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95,204	302,720	76.6	395,204	10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69,319	528,229	60.8	738,733	85.0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151	55,087	18.1	141,191	46.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292,700	73,055	25.0	292,7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40,071	40.1	100,000	100.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949,637	911,902	46.8	1,949,637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21,108	953,325	49.6	1,901,700	99.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12,690,425	-	-	7,700,000	60.7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132,000	132,000	100.0	132,000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1,472	444,582	47.2	919,950	97.7
기본경비	144,987	120,823	83.3	144,987	100.0
38세금징수과	7,478,195	4,868,642	65.1	7,226,467	96.6
고액 체납시세 징수 강화	1,022,857	771,129	75.4	771,129	75.4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9,018	1,300,600	58.3	2,229,018	100.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4,148,754	2,732,273	65.9	4,148,754	100.0
기본경비	77,566	64,640	83.3	77,566	100.0

V.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6	33	3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2	10	2	-	-
	건의 사항	17	16	1	-	-
	기타(자료제출 등)	7	7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압구정동 390번지는 사유지이나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재산관리 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사유재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거 매년 재산관리관 주도로 무단점유 사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사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재산관리과-3836, ’21.4.7.) ○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지적공부, 등기 사항증명서 대조를 통한 등기 누락여부 파악과 현장 점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재산관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21.5.12.) ○ 기존의 재산관리관 주도 정기실태조사와 더불어 총괄관리관(재산관리과)과 각 재산관리관이 협업하여 현장 전수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사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은평·마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토지 5,975필지, 건물 187호 · 조사결과 : 무단점유 39필지, 공부불일치 60필지, 기처분 45필지 발굴 · 결과조치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조치 및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p>○ 2022년도 서울시 지방세 세입 예산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15%를 초과하는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세수추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년간 전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적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계속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도 5년 평균 예산대비 15.1% 초과징수가 발생하였음 ○ 최근 지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 대출제한과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2년 이상 지속된 가격상승도 인상폭의 감소가 시작됨 ○ 다만, 주택 외 상가, 빌딩, 토지 등의 거래는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고, 향후 정부의 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거래세 완화 정책 기대감과 코로나 치료제 보급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잠재된 소비 정상화 등이 기대되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대 의회 출범이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 개선된 것은 출연금 규모가 일부 조정된 것 외에는 발전이 없음.</p> <p>①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법 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②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재원에도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지출 문제 개선, ③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④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⑤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을 바라고, 관철될 때까지 행안부와 타지자체와도 협의하기 바람. 상기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예산심사 시까지 제출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① 재단법인화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설립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어야 함 (법률자문회신 2018-0903, 법률지원과 '18.11.16) ○ 특수법인인 기타법인은 민법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등기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질의 및 회신결과('19.4.8) <p>② 출연대상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면담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9.30 행안부 전화면담, '21.10.28 개정건의 ※ 행안부 의견 : 모든 지자체 협의시 신중 검토 <p>③~⑤ 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구 요청('21.9월) ○ 서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의 활용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의뢰('21.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 2021.10월~2022.7월 (10개월) ○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관리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정률 출연 → 개선후) 사업계획 심사 출연액 산정 및 지자체 예산심의 확대 - 기관운영실적 평가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절대·단독평가 → 개선후) 평가단 확대 및 상대·교차검증 평가 ○ 행안부 및 연구원에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 건의('22.9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안 관철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안건 상정 등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 발표 시 48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최종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재원으로써 서울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 증가율은 30% 내외 수준에 그침.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사실 면에서 모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에 서는 추후라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던지 내부적으로라도 진언을 하시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비전2030은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재원은 주로 ①세출구조조정으로 하고 보조적으로는 경기회복,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②지방세 세입증가분을 감안하여 기획된 사업임 ○ 재산세를 언급한 것은 지방세의 많은 재원 중 하나만을 예시로 든 상황으로 보아야 할 사항임 ○ 향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비전 사업의 기획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기조실, 언론과 등)에 협의하겠음
<p>○ 서울시 공유재산 운영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 회의 안건 통과율이 96%에 달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심의 전에 심의회에서 사전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사업부서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 바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상정 전 의회 의결 없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 공문발송,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 중에 있음 ○ 또한 관리계획 의결 후에도 삭제된 안건 및 관리계획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과 전 상임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의결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 ○ 향후에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절차 확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사업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절차이행 준수 안내 -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 상담시 의회 예산 편성권 존중 안내 - 심의회 절차 미준수시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미편성 조치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감사원이 작년 6월 SH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올해 4월 市 감사위원회를 통해 통보 받은 바 있으며, 위탁 시유재산 처리 부적정 사례 및 시유지 위탁 관리 업무 철저 등의 주의를 받았음. 세입결손으로 인한 서울시 운영의 방해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시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125필지 조치완료(~'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계약 체결 14건, 변상금 부과 및 매각 7건, 측량 71건, 지적정리 1건, 행정재산 전환 추진 18건, 소송 및 원상복구 조치 등 14건 ○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분기별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금 체납자 중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자 18건 압류조치 완료('22.9월) ○ 향후에도 위탁 시유재산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p>○ 서울시 마을세무사 추천을 한국 세무사고사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상담을 1건도 하지 않은 마을세무사가 전체의 50%임. 서울시 마을 세무사라는 경력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한 양식 개선 및 실적 제출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 작성 시 상담내용 기록카드 작성 생략 안내('22.1월) - 활동요령 안내문, 상담실적 작성법 카드뉴스 밴드 게시('22.1월) ○ 실적 저조 세무사 등 74명 해촉 후 신규 위촉('22.1월)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용 리플릿·포스터 제작·배포, 시 홈페이지 게시('22.1월) - 전광판 등 표출 홍보,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22.3월) ○ 마을세무사 밴드 개설 및 활동 모니터링('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세무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밴드 개설·운영 - 마을세무사 경력 영업수단 이용 주의 요청 안내문 밴드 게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취소되었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들이 있음.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에 관리계획 가결 이후 사업 진행 취소 시 관리계획을 재상정 해야함을 재차 안내하고 의회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음 (자산관리과-12123호, 2021.11.25.)
<p>○ 서울시 재산의 감정평가를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선정해 주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 서울시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협회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몰아줄 우려가 있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존 방식인 확정순번제가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업자추천제 활용에 대한 협조 요청('18.7.6)이 있어 감정평가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공정성을 당부하는 공문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발송하였으며(자산관리과-141, '22.1.5),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p>○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9월 302회에 제출했다가 11월 303회에 제출함.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 세제과장,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음. 2022년 예산을 심의해야할 시기에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하여 충분히 심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안은 다음연도 예산심의 정례회 전 회기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편의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소관실국 위원회 중 외부위원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누락하였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매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근거 마련 후 별도로 보고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해당 요구자료에 대하여 재무국 소관 상설 위원회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음 ○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요구자료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 또한 법적근거가 없는 부동산취득세자문회의의 상설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출완료함('21.11월)
<p>○ 조례를 통해 감면되고 있는 세액 규모가 8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지원이 사업 효과성 면에서 우월할 수 있으니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임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연구 용역 추진('22년 9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7. 13.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세감면)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시세 감면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기한 도래 시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음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지방세 체납 결산서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계상되고 있으니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 규모를 한 곳에 모아 결산서에 계상해 줄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 및 38세금징수과에서 나누어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과 : 자치구에서 위임징수한 지난년도 체납시세를 계상 - 38세금징수과 : 시로 이관된 고액체납시세만(1천만원 이상) 계상 ○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와 38세금징수과에서 각각 처리하던 방식을 38세금징수과에서 일원화하도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월 2022년 세입예산편성 부터 38세금징수과에서 업무처리
<p>○ 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 근무시간이 더 많음. 직원들의 눈치 보기 야근이 우려되는 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팀장급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근무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실시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주무관의 비율이 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재무국 소속 팀장급 대상으로 5급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최대 연 600시간, 월평균 50시간 이내)를 준수하도록 안내(2021.11.24.)하였고, ○ 앞으로도 부서장이 팀장급 초과근무 총량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무국 소속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최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체납세금의 징수실적이 아닌 결손 처분에 따른 것으로,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기 바람</p> <p>(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시에도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압류부동산·자동차의 체납처분 중지 후 결손처분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장기 소액채권 (185만원 미만)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 연구를 강화하여 결손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p>○ 시유지의 연간 매도계획을 마련하여 세입·세출 추계 시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고, 무단점유 변상금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매년 세입 편성 전 대규모 사업시행기관(SH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에 차년도 시유지 매입 계획을 파악하여 세입추계에 반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시유재산 매입계획 파악하여('22.6월) 세입추계반영 ○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 해소를 위해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 중이며,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조치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체납징수계획 수립('22.4월) 및 분기별 재산조회·재산압류 조치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사용에 부서에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사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은 발주부서 담당자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 견적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적정 업체를 찾기 위한 발주 담당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달기회가 없었던 신생업체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행정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여 발주담당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등을 통한 안내 완료('22.1월)
<p>○ 자의적 조세행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구 세입으로 재정자립 재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서울시 세입의 감소뿐 아니라 교부세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면 결정전에 미리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자치구세를 감면할 수 있음 ○ 즉,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 권한으로, 감면 결정 전 사전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자치구의 무리한 감면 결정은 다른 자치구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시 및 자치구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실효적 사전 협의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3월중 시 및 자치구 조례 담당 영상회의 개최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 또는 수시 자치구 동향 파악 등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세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필요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종합대책 수립 및 세입실적 분석을 통한 시세입 징수목표 초과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수립 및 시·구 합동영상회의(5월) -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 및 자치구 지도감독, 교육실시 - 법인시공 개인 신축건물 조사계획 수립, 대상자 조사 및 부과(4월~7월) - 세무조사 계획을 통한 조사대상('21년 25개 → '22년 50개) 확대 선정 50개 대상 세무조사 및 시 직접부과 추진 ○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으로 시세징수 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강화, 제2금융권 일제조사, 분양권 내역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p>○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00 전 회장의 압류 예술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지 않아 압류 물품을 반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사회저명 인사의 체납액 징수는 상징성이 큰 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가단5079137 소유권 확인 소송 피고보조참가 신청('21.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이00(최00 전 회장의 부인)외 3(최00 전 회장의 자녀) - 피고: 최00 전 회장 ○ 우리시 피고 보조참가 소송 신청('21.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앤엘 파트너스(신영무 외3) 변호사 선임('21.7.5.) - 우리시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21.12.21) - 우리시 피고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22.4.6) ○ 1심 법원 각하판결('22.5.13), 확정종결('22.6.9) ○ 압류동산에 대하여 소송확정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임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건수, 체납금액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액은 제자리 걸음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실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등 서울시 체납행정을 강화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와 협업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실시('22.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전체 외국인 체납자 중 99.9%가 자치구 소관으로 외국인 체납 일소를 위한 25개 자치구 일제 정리 기간 추진 ○ 외국인체납 관리체계 제도개선 행안부 건의('2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대장 조회 일원화, 체납자 입국 시 입국통보, 출국제한 신설 등 ○ 외국인 체납 중 주요 체납액인 개인분 주민세를 관광세 또는 체류세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과제 행안부 건의('22.4월) ○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14개국 언어로 지방세 납부 안내 팝업창을 게시하여 상시 홍보('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재·팝업공지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아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체납 징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 등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건의함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한 홍보활동 및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재산은닉에 대응하는 신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강화로 '21년 세입목표보다 117.3% 초과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자기앞수표 발행 조사, 영치금 압류 실시 - 체납자 배제 상속재산 확인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적극 수행 -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처분 - '97년 부도 후 '09년 청산된 한보철장 체납세금 추적 징수 - '20년간 폐업법인 체납자 추적하여 건물주 행세 임차인의 채권압류 -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차량공매, 공탁금, 특허권 등 압류 ○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통한 실익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익없는 부동산·자동차의 등기부 등 정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 실시 ○ 「납세담보」 제도를 통한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 확보 지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 선착주의의 예외로 '납세담보'를 통한 선순위 채권확보가 가능 -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담보 중점 추진을 통한 체납액 정리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탈루된 지방세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의 실적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시민 제보로 징수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부진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5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 유인책으로 부족함.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 수준의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 필요함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독성과 홍보효과가 높은 서울시 옥외매체에 3주간 집중 노출 - 자치구 소식지(‘21.12월 호) 게재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변경하는 제도개선 과제 행안부 제출(’22.4.11) ○ 향후에도 서울시-25개 자치구 합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요 SNS 계정, 내손안의 서울, 팟캐스트 등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 전광판 등 주요미디어와 가로게시대 홍보를 동시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25개 자치구 소식지 게재
<p>○ 매년 평균 15% 수준의 지방세 초과 세입 발생으로 2조 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운영은 시민을 위한 필요 사업에 적기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그만큼 필요 이상의 세입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세입은 과거 5년의 징수추이 등을 반영하고 세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입 징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과학적 추계하였음 ○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 예산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의 지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장적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도 금년 예산은 전년 본대비 19.8%, 추경대비 7.8% 인상하여 추계 ○ 특히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다소 적극적인 세입확장(전년대비 15.3% 인상)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확대검토 필요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의 피해 최소화 ○ 대상: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 지원실적 (’22. 1월~9월말 현재) (단위: 건,억원) <table border="1" data-bbox="555 645 1444 752"> <thead> <tr> <th colspan="2">합계</th> <th colspan="2">기한연장</th> <th colspan="2">징수유예</th> <th colspan="2">체납처분 유예</th> </tr> <tr> <th>건수</th> <th>세액</th> <th>건수</th> <th>세액</th> <th>건수</th> <th>세액</th> <th>건수</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407,436</td> <td>1,857</td> <td>406,355</td> <td>853</td> <td>1,008</td> <td>1,004</td> <td>73</td> <td>0.2</td> </tr> </tbody> </table> <p>※ ’20~’21년 지원실적: 총 834,476건 8,342억원</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납세지원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례 등에 의한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지원하고자 함 	합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407,436	1,857	406,355	853	1,008	1,004	73	0.2
합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407,436	1,857	406,355	853	1,008	1,004	73	0.2																		
<p>○ 전국적 체납의 공동사무 수행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합 설립 계획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야함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입법 수단을 통해 지방세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체계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인 행태임. 지방세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자치권 침해 관련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돕겠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조합 설립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관계부처 합동, ’19.6.5.) 안전 포함 - 지방세조합 설립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20.12.9.) - 행안부 주관 17개 시·도과장 회의(’21.5.10.) ※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구성 및 설립지원 TF 임시조직 운영 경기도에서 명목상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대표를 맡기로 결정 - 경기도 주관 시·군 조합업무 담당자 조합설립 실무 협의회(’21.8.18.) ○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조합의 설립 첫 단계인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음 - 지방세조합 설립지원팀(TF) 운영 종료로 ’22.9.15. TF 해산 ※ 지방세조합의 설립 절차 - ① 지자체간 협의 → ② 규약제정 → ③ 지방의회 의결 → ④ 조합설립 신청 및 승인 ⑤ 조합설립 운영 ○ 현재 지방세조합 관련해서는 추진사항이 전혀 없고 사실상 해산상태에 있어, 지방세조합 설립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조치결과
<p>○ '82년도에 한강 재정비 사업으로 설치된 한강дук 부지가 도로부지로 되어있지만 현재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 부지에 '20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인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는 등 진행 중임. 다만 이 부지의 일부(1,718㎡)는 사유지로서 자치구에서 매입이 어려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SOC사업은 자치구 고유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 시에는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토지 매입하거나 재산을 교환하는 방안이 사유재산 관리·보존에 타당함 - 이에 따라, 서울시-영등포구 간 재산 교환 확정(~'22.9월)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22.9월)
<p>○ 영등포구 종합시장 토지는 민간 소유이고 건물의 일부(공유지분: 계단, 복도)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주민들이 일일이 소송하여 정리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사항 관련 소송은 도로계획과 소관사항으로써, 소송이 종결('17.11 화해권고결정)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18.2월) -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입증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가 있을 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 입증자료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市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함(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계약심사과와 같은 민원인의 내방이 많은 부서는 사무실 공간을 넓게 재배치하는 것을 건의함 (계약심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21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과 내방인은 대부분 내부직원임 ○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계약심사과 사무실 직접 방문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대면업무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분산사용 함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음 ○ 사무공간 배치 총괄부서(총무과)에 협조 공문 발송('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재배치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협조요청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직급별 재택근무 현황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 서울린 사업 관련 계약심의 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 재무국 팀장이 주무관에 비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사유 (서면보고 요청)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 오세훈 시장 이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였음. 이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진행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해 주고 정부와 협의내용도 보고바람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가표준액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부 건의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하겠음
○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수당 지급 근거 및 상설 설치 관련 보고 요청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
○ 최근 3년간 상위 30개 감정 평가법인에 지급한 내역(금액 순으로) (재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
○ '22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자료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